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5

2011.12.30.제정 2012.08.07.개정 2013.04.08.개정 2016.09.01.개정 2017.03.01.개정 2018.01.31.개정 2018.02.28.개정 2019.07.16.개정 2020.02.12.개정 2020.04.29.개정 2020.09.25.개정 2023.02.28.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본교 인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업적평가)는 본교 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04.08., 2018.02.28.>

제2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 연2회 시행한다.

- **제3조(계약기간)** 교원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4.08., 2018.02.28., 2020.02.12.>
- 제4조(근무기간의 계산) ① 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 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 ②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③ 공무로 국외 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 또는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정관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임용 통보 및 신청) ①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5

- 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② 임용기간 만료일을 통지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임용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④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의2(재임용 심사 및 요건)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심사대상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다. 단, 외국인교원은 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6.09.01., 2020.02.12., 2020.04.29.>
 - 1. 교원의 재임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취득점수 <개정 2016.09.01., 2020.02.12.>

직 급	교수업적평가 평균취득점수	임용계약기간	심사대상기간	비고
교수 부교수	700점 이상	4년	이전	
조교수	700점 미만	1년	계약기간	

- 2. 삭제 <2016.09.01.>
- 3. 재임용 심사를 위한 임용기간(심사대상기간)과 교원의 재임용심사기준에 따른 "교수 업적평가"의 평가기간이 다른 경우 다음 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승진임용, 신규임용 등으로 "최초1년" 또는 "최초6개월"의 기간이 상이하더라도 다음 표의 "최초1년" 또는 "최초6개월"로 적용한다. <호 신설 2023.02.28.>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5

기준	최초 1년 (3.1~익년2.28)	2,3년차 (3.1~익년2.28)	4년차 (반영기간 : 3.1~11.30)	비고
3월1일 재임용 대상자	교수업적평가 취득점수(전체)	교수업적평가 취득점수(전체)	4.1정원내재학생충원율(200) 10.1정원내재학생충원율(100) 1학기 강의평가(20) 1학기 상담실적(20) ※ 380점 만점 기준의 취득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임용기간이 1년일 경우 "4년차"평가방법을 따른다
기준	최초 6개월 (9.1~익년2.28)	2,3,4년차 (3.1~익년2.28)	마지막 연차 6개월 (반영기간 : 3.1~5.30)	비고
9월1일 재임용 대상자	직전 6개월(3.1~8.31)을 포함한 1년간의 교수업적평가 취득점수(전체)를 500점 만점으로 환산	교수업적평가 취득점수(전체)	4.1재학생충원율(200) or 2,3,4년차 교수업적평가의 평균취득점수 중 높은 점수를 500점 만점으로 환산	임용기간이 1년일 경우 직전년도 10.1정원내재학생충원 율(100) 2학기 강의평가(20) 2학기 상담실적(20) 및 금년도 4.1정원내재학생충원율 (200)※ 380점 만점 기준의 취득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환산

-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해야하 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시 마지막 연차의 심사기간(반영기간)과 재임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사방법은 본조 제①항 제3호의 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른다.<호 신설 2023.02.28.>
- ②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04.08.>
- ③ 삭제 <항 신설 2016.09.01.>, <2020.02.12.>
- ④ 700점 미만 취득으로 임용계약기간이 1년으로 재임용된 자는 1년을 재임용 유예기간으로 보며, 재임용 유예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70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 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당연퇴직한다. <신설 2020.02.12.>

제6조(심사절차) ① 삭제 <2012.08.17.>

② 삭제 <2012.08.17.>

제7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삭제 <2012.08.17.>

② 삭제 <2012.08.17.>

제7조의2(심사방법 및 절차)

- ① 심사방법은 계약기간 중 교수업적평가 취득점수를 산술평균한다. <개정 2020.02.12.>
- ② 삭제 <2020.02.12.>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4/5

③ 심사절차

- 1. 교원인사위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자가 생길 경우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1., 2020.04.29.>.
- 2. 재임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심사 대상자는 재임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임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 3. 교원인사위원장은 소명자료를 접수받은 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받은 소명 자료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고,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삭제 2023.0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2012.08.17.>

- 가. <삭제 2012.08.17.>
- 1) <삭제 2012.08.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08.17.>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규정 제31조(재임용 요건 및 제한) 제1 항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2.08.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3.04.0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5/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재임용 심사기준표(정년전임교원, 산업체경력교원)<삭제 2012.08.17.> [별지 2] 재임용 심사기준표(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삭제 2012.08.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11
제정일자	2011.12.30.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6/5

[별지 3호] 삭제 <개정 2016.09.01., 2018.01.31., 2018.02.28.>, <2020.02.12.>

[별지 4호] 삭제 <개정 2016.09.01., 2017.03.01., 2018.01.31.>, <2020.02.12.>

[별지 8호] 삭제 <개정 2016.09.01.>, <2020.02.12.>

[별지 5호] 삭제 <2018.01.31.>

[별지 6호] 삭제 <2018.01.31.>

[별지 7호] 삭제 <2018.01.31.>

[별지 8호] 삭제 <2016.09.01.>

[별지 9호] 삭제 <2016.09.01.>

[별지 10호] 삭제 <2016.09.01.>

[재직기간이 심사대상기간보다 짧을 경우 평점기준 산출방법] 삭제 <2016.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